

1. 개정이유

국토교통부장관의 구역형 유상 여객운송 허가 특례부여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82호, 2024. 1. 9. 공포, 2024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관련 서류 접수기관 명확화(안 제7조)
 - 자율주행 관련 기업의 유상 여객운송허가 특례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특례별 신청 및 서류 접수기관 명확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교통부장관”을 “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조(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	례) ①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	제7조(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	례) ① -----	
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	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		-----	
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	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		-----	
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	송 허가신청서(전자문서에 따른		-----	
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	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<u>국토교통</u>		-----	
<u>부장관</u> 에게 제출해야 한다. <단	<u>서 신설></u>		----- <u>시범운행</u>	
			<u>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</u>	
			<u>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</u>	
			<u>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</u>	
			<u>도지사”라 한다)---</u> . <u>다만, 법</u>	
			<u>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</u>	
			<u>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</u>	
			<u>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</u>	
			<u>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	
1. ~ 3. (생 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	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	② -----		
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	한정운수면허 신청서(전자문서	-----		
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		-----		

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<u>특별시장</u> <u>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</u> <u>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(이하</u> <u>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에게 제출 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③ (생략)	----- ----- <u>시·도지</u> <u>사</u>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